

울산지방법원 2020. 10. 13 선고 2020가단816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
103.66㎡를 인도하고,

나. 2019. 5. 1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정재욱

별지